

고 성 군 세 조 레 증 개 정 조 레 안

(의안번호 제456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3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2. 16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12. 23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1997. 10. 1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. (안 제14조의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 제70조 및 경상남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근거에 의거 납세자가 과세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전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과세전적부심사시 본인의 청구조건은
- 답 : 세무조사결과 사전 과세예고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청구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